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

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경 위원장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

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

최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·감독이 부실하여
체육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음주·흡연·취사행위 등으로 인한

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되고

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불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이에 공공체육시설 내 음주·흡연·취사 행위로
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일정 기간
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
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이에 안 제5조의3제2항의 경우,
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사용·이용허가의
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
사용 허가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
이에 안 제23조제1항제1호의 경우,
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
위임되어 있어, 사용 허가의 제한도 위임사무에
추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아무쪼록 이번에 개정하는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
취지를 감안하셔서

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
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